##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 안 번호 9141

제출연월일 : 2025. 3. 19.

제 출 자:정 부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할 수 있는 공업지역정비특별회계의 세입에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재원을 포함하고, 공업지역정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·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하려는 것임.

법률 제 호

#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7조제2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6항 중 "대통령경으로"를 "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"로 한다.

9.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재원

#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7조(공업지역정비특별회계의	제57조(공업지역정비특별회계의
설치 및 운용) ① (생 략)	설치 및 운용) ① (현행과 같음)
② 공업지역정비특별회계의 세	②
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
1. ~ 8. (생 략)	1. ~ 8. (현행과 같음)
<u> &lt;신 설&gt;</u>	9.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
	의 조례로 정하는 재원
③ ~ ⑤ (생 략)	③ ~ ⑤ (현행과 같음)
⑥ 공업지역정비특별회계의 설	6
치 및 운용・관리에 필요한 사	
항은 <u>대통령령으로</u> 정한다.	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
	례로